

<p>&lt; 학교 생활 목표 &gt; 서로 도와 우애하고 슬기롭게 배우자</p>	<p>가정통신문</p>	<p>군산서흥중학교 ☎ 460-0727</p>
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**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평가 사전 안내**

안녕하세요?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·의심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과 미응시에 따른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
**◆ 코로나19 확진·의심증상 학생 분리고사실 운영 ◆**

- ① **코로나19 확진·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, 학교별 기말고사(2차고사)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**
- \*의심증상 학생은 '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' 임
- ② **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(인정비율 100%)**
- ③ **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 제한**
  - 1일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차에 응시 등을 제한하며,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(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) 제출 필요
  - \* **의료기관의 증빙서류(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)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%부여**
  - \* **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**

**◆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◆**

-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. (예: 생리결석의 경우 출결은 인정결석이나 평가인정점은 질병결석에 준하는 80%인정비율로 인정점 부여)
-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
-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

**[결시생 성적처리]** :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
- ① **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(인정점 부여)하는 것이 원칙임 (100%인정비율 적용)**
- ② **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(선별진료소 포함)의 검사결과서(PCR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, 진료확인서) 필수 확인**, 단,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,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
  - ※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,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.
  - ※ **확진자 급증으로 입원·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**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지정(24시)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(학생건강정책과-1361, 22.2.17.)
  - ⇒ 문자통보된 입원·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- ③ **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**

**[코로나19 백신 접종]**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

«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»

	접종일	접종 후 1일	접종 후 2일	접종 후 3일~
출결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	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
평가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(100%인정비율 부여) ※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'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사' 사유에 해당하므로, 임의변경 불가		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(80%인정비율 부여) ※ 임의변경 불가
평가 증빙자료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의사 진단서(소견서) 등		의사 진단서(소견서) 등

※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(수행)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

※ 평가 기간의 경우,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

※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(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)가 없는 학생의 경우,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(80%)로 성적 인정점 부여[교수학습평가과-7361(2021.11.11.)]

[지필평가 인정점 산출식 - 예시]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점 부여비율}$$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결시고사(2차고사)	최종 인정점
	평균	기준점수	평균	
수학	68.0	65	62.3	47.64

\*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사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

- 1) 68.0 : 65 = 62.3 : 인정기준점수
- 2) 인정기준점수 = (65×62.3) / 68 = 59.55
- 3) 인정기준점수 × 0.8(병결 인정점 부여비율) = 47.64
- 4) 최종 인정점 = 47.64

1.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'평균점수 비율(전입생 제외)'로 한다.
2.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.
  - 1순위 :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
  - 2순위 :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(교과)의 성적
 ※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,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
3. 3.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,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  - 가.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사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  - 나. 전과목 결사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사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  - 다.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사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  - 라. 동일 학기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사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  - 마.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하여 결사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
2022. 6. 22.

**군산서흥중학교장** <직인생략>